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성을 증진시키고,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법령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·도지사가 검사하는 지적재조사 기초측량성과를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초측량성과를 대행하는 지적소관청은 세부측량성과 검사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8.00. ~ 0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성”을 “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(이하 “책임수행기관”이라 한다)지적재조사측량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적기준점측량성”을 “기초측량 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제외한 기초측량 성과는 시·도지사가 검사하며, 지적소관청은 그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·도지사에게 송부하고,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

다만 시·도지사가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업무를 지적소관청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기초측량성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세부측량성과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지 제제1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지 제15호서식 중 “없음”을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(별표)에 따름”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신청인	법인의 명칭	법인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
	전화번호	설립 연월일
	설립 근거	
	설립 목적	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(전국□, 00권역□)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또는 대리인)

(전화번호: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2. 다음 각 목의 서류(「민법」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해당합니다) 가.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(지적분야로 한정한다) 1,000명(권역별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) 이상이 상시 근무함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제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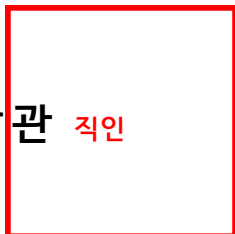
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

1. 법인의 명칭: (법인등록번호:)
2. 성명(대표자):
3. 주 소:
4. 설립근거:
5. 설립목적:
6. 설립 연월일: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(전국, ○○권역)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



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[] 열람 [] 발급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즉시	
신청인	성 명 (기관·단체명)	생년월일 (등록번호)			
	주 소	전화번호			
토지의 표시	읍·면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㎡)
신청 항목	☐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☐ 조정금 산정에 관한 증명 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☐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				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([] 열람 [] 발급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 별표에 따름
------	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) ① <u>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		제6조(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) ① <u>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(이하 “책임수행기관”이라 한다)지적재조사측량성---</u>		
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,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(<u>지적기준점측량성과는 제외한다</u>)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.		② ----- ----- ----- --- <u>기초측량 성</u> ----- ----- ---		
③ (생략)		③ (현행과 같음)		
④ <u>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·도지사에게 송부하고,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</u>		④ 제2항에 따라 제외한 기초측량 성과는 시·도지사가 검사하며, 지적소관청은 그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·도지사에게 송부하고,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 <u>다만 시·도지사가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</u>		

<u><신 설></u>	<u>업무를 지적소관청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⑤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기초측량성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세부측량성과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현행						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선정] <개정 2020. 6. 18.>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☐ 열람 ☐ 발급 신청서 ※ ☐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접수번호</th> <th>접수일</th> <th>처리일</th> <th>처리기간</th> <th>특시</th> </tr> <tr> <td colspan="5"> 신청인 성명 (기관 단체명) 주소 생년월일 (종목번호) 전후번호 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토지의 표시</td> <td>읍면</td> <td>동리</td> <td>지번</td> <td>지목</td> <td>면적(m²)</td> 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 colspan="5"> 신청 항목 ☐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☐ 조점굴 산정에 관한 증명 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☐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(☐ 열람 ☐ 발급)을 신청합니다.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공문서봉 없음 수수료 없음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210mm×297mm[백설지(80g/㎡), 복문, 동질지(80g/㎡)]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선정] <개정 2020. 6. 18.>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☐ 열람 ☐ 발급 신청서 ※ ☐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접수번호</th> <th>접수일</th> <th>처리일</th> <th>처리기간</th> <th>특시</th> </tr> <tr> <td colspan="5"> 신청인 성명 (기관 단체명) 주소 생년월일 (종목번호) 전후번호 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토지의 표시</td> <td>읍면</td> <td>동리</td> <td>지번</td> <td>지목</td> <td>면적(m²)</td> 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 colspan="5"> 신청 항목 ☐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☐ 조점굴 산정에 관한 증명 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☐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(☐ 열람 ☐ 발급)을 신청합니다.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공문서봉 없음 수수료 없음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210mm×297mm[백설지(80g/㎡), 복문, 동질지(80g/㎡)] </td> </tr> </table></td></tr></table>						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특시	신청인 성명 (기관 단체명) 주소 생년월일 (종목번호) 전후번호					토지의 표시	읍면	동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															신청 항목 ☐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☐ 조점굴 산정에 관한 증명 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☐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					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(☐ 열람 ☐ 발급)을 신청합니다.						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공문서봉 없음 수수료 없음						210mm×297mm[백설지(80g/㎡), 복문, 동질지(80g/㎡)]						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선정] <개정 2020. 6. 18.>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☐ 열람 ☐ 발급 신청서 ※ ☐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접수번호</th> <th>접수일</th> <th>처리일</th> <th>처리기간</th> <th>특시</th> </tr> <tr> <td colspan="5"> 신청인 성명 (기관 단체명) 주소 생년월일 (종목번호) 전후번호 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토지의 표시</td> <td>읍면</td> <td>동리</td> <td>지번</td> <td>지목</td> <td>면적(m²)</td> 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 colspan="5"> 신청 항목 ☐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☐ 조점굴 산정에 관한 증명 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☐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(☐ 열람 ☐ 발급)을 신청합니다.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공문서봉 없음 수수료 없음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210mm×297mm[백설지(80g/㎡), 복문, 동질지(80g/㎡)] </td> </tr> </table>						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특시	신청인 성명 (기관 단체명) 주소 생년월일 (종목번호) 전후번호					토지의 표시	읍면	동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															신청 항목 ☐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☐ 조점굴 산정에 관한 증명 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☐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					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(☐ 열람 ☐ 발급)을 신청합니다.						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공문서봉 없음 수수료 없음						210mm×297mm[백설지(80g/㎡), 복문, 동질지(80g/㎡)]					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특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 성명 (기관 단체명) 주소 생년월일 (종목번호) 전후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토지의 표시	읍면	동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 항목 ☐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☐ 조점굴 산정에 관한 증명 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☐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(☐ 열람 ☐ 발급)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문서봉 없음 수수료 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10mm×297mm[백설지(80g/㎡), 복문, 동질지(80g/㎡)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선정] <개정 2020. 6. 18.>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☐ 열람 ☐ 발급 신청서 ※ ☐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접수번호</th> <th>접수일</th> <th>처리일</th> <th>처리기간</th> <th>특시</th> </tr> <tr> <td colspan="5"> 신청인 성명 (기관 단체명) 주소 생년월일 (종목번호) 전후번호 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토지의 표시</td> <td>읍면</td> <td>동리</td> <td>지번</td> <td>지목</td> <td>면적(m²)</td> 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 colspan="5"> 신청 항목 ☐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☐ 조점굴 산정에 관한 증명 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☐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(☐ 열람 ☐ 발급)을 신청합니다.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공문서봉 없음 수수료 없음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 210mm×297mm[백설지(80g/㎡), 복문, 동질지(80g/㎡)] </td> </tr> </table>						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특시	신청인 성명 (기관 단체명) 주소 생년월일 (종목번호) 전후번호					토지의 표시	읍면	동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															신청 항목 ☐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☐ 조점굴 산정에 관한 증명 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☐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					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(☐ 열람 ☐ 발급)을 신청합니다.						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공문서봉 없음 수수료 없음						210mm×297mm[백설지(80g/㎡), 복문, 동질지(80g/㎡)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특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 성명 (기관 단체명) 주소 생년월일 (종목번호) 전후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토지의 표시	읍면	동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 항목 ☐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☐ 조점굴 산정에 관한 증명 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☐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(☐ 열람 ☐ 발급)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문서봉 없음 수수료 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10mm×297mm[백설지(80g/㎡), 복문, 동질지(80g/㎡)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